

자연드림 힐링밥상
등록번호 : 20240260
최초 등록일 : 20240219
최종 등록일 : 20251222

www.icoop.or.kr

자연드림 힐링밥상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콥스토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5. 00. 00.

주식회사 콥스토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망포동, ICOOP수원영통센터)

대표 전화번호 : 1577 - 6009

대표 팩스번호 : 031)428 - 3171

담당부서 전화번호 : 031)428 - 312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쿵스토어	자연드림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망포동, ICOOP수원영통센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02.08	2006.02.02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법인등록번호	161111-0010737	사업자등록번호	310-81-1871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홍현주 /쿵스토어	자연드림힐링 밥상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사내이사	홍현주 /쿵스토어	자연드림힐링 밥상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사내이사	심정아 /쿵스토어	자연드림힐링 밥상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사내이사	김순연 /쿵스토어	자연드림힐링 밥상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감사	류철홍 /쿵스토어	자연드림힐링 밥상의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홍현주	031-428-3124	031-428-317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자연드림 힐링밥상”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자연드림 힐링밥상	
상호	자연드림 힐링밥상 0000점	지역 및 인근 가맹점을 고려해 상호결정
상표(서비스표)	자연드림 힐링밥상	출원번호 : 40-2023-0187204
광고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8,490,974	19,589,535	-1,098,560	66,515,624	-2,045,656	-2,396,027
2023년	8,946,189	9,966,840	-1,020,651	27,692,054	-1,637,979	77,909
2024년	9,541,877	11,342,918	-1,801,040	8,371,641	-265,449	-780,389

그 근거자료는 별첨1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위 매출은 주식회사 쿵스토어 브랜드 합산매출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홍현주	대표이사	2023년 9월 20일 ~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홍현주	사내이사	2021년 3월 30일 ~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심정아	사내이사	2024년 3월 27일 ~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김순연	사내이사	2024년 3월 27일 ~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류철홍	감사	2024년 3월 27일 ~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3	1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영업포지	등록번호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식회사 쿵스토어	가맹사업 경영	08.08.08~현재	자연드림	20080500028	기타도소매(친환경식품) 경영
		가맹사업 경영	24.02.19~현재	자연드림 힐링밥상	20240260	한식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자연드림 힐링밥상	상표	23.10.18 출원	40-2023-018720	아이쿵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

권리범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범위이내 사용
------	--------------------

* 상기 상표명칭 및 로고는 출원중이라 관련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이에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사업 현황

1. 자연드림 힐링밥상을 시작한 날 : 2024년 04월 1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11월 17일)

2. 자연드림 힐링밥상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농업법인쿵스토어	자연드림 힐링밥상	홍현주	2024.04.1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주식회사 쿵스토어	자연드림 힐링밥상	홍현주	2023.11.1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2층

3. 자연드림 힐링밥상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자연드림 힐링밥상	한식	죽, 비빔밥, 분식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26	24	2
서울	-	-	-	-	-	-	2	2	-
부산	-	-	-	-	-	-	3	3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0	0	-
광주	-	-	-	-	-	-	2	2	-
대전	-	-	-	-	-	-	2	2	-
울산	-	-	-	-	-	-	1	1	-
세종	-	-	-	-	-	-	0	0	-
경기	-	-	-	1	-	1	4	2	2
강원	-	-	-	-	-	-	0	0	-
충북	-	-	-	-	-	-	2	2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	-	-	1	1	-
전남	-	-	-	-	-	-	3	3	-
경북	-	-	-	-	-	-	2	2	-
경남	-	-	-	-	-	-	1	1	-
제주	-	-	-	-	-	-	1	1	-

5. 최근 3년간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0	25	-	1	3	24

6. 자연드림 힐링밥상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쿱스토어	자연드림	20080500028	도소매	215/34	235/7	224/5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4년 말 가맹점수	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24	154,296	4,358	1,192,269	91,703	6,964	238	
서울	2	-	-	-	-	-	-	5개점포미만
부산	3	-	-	-	-	-	-	5개점포미만
대구	1	-	-	-	-	-	-	5개점포미만
인천	0	-	-	-	-	-	-	5개점포미만
광주	2	-	-	-	-	-	-	5개점포미만
대전	2	-	-	-	-	-	-	5개점포미만
울산	1	-	-	-	-	-	-	5개점포미만
세종	0	-	-	-	-	-	-	5개점포미만
경기	2	-	-	-	-	-	-	5개점포미만
강원	0	-	-	-	-	-	-	5개점포미만
충북	2	-	-	-	-	-	-	5개점포미만
충남	1	-	-	-	-	-	-	5개점포미만
전북	1	-	-	-	-	-	-	5개점포미만
전남	3	-	-	-	-	-	-	5개점포미만
경북	2	-	-	-	-	-	-	5개점포미만
경남	1	-	-	-	-	-	-	5개점포미만
제주	1	-	-	-	-	-	-	5개점포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1년 미만 영업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4년 07월(6개월이하)이후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개수에는 포함되었지만, 연간평균액 추정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8.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자연드림 힐링밥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4개점포	22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당동지점	경기도 군포시 당동 921-5번지	031-399-89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자연드림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정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전기증설공사 / 외부간판1면이상 / 철거 / 외부창호 / 소방공사 / 기타매뉴얼 시공의 공사품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안되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용업표지 사용의 대가 3. 노하우제공의 대가 4. 개업지원의 대가 5. 기타자료제공의 대가	11,000,000원	가맹점 오픈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5,500,000원	교육이수후 반환안됨.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부가세포함 /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보증금	-
합계	16,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점 설비등(추가공사, 리뉴얼공사포함)의 공급을 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동일한 점포환경 및 품질을 위하여 공사감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감리업체(인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에 인테리어 및 시설등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공사와 관련된 감리비등의 공사비용을 직접 수령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실면적 39.6㎡(12평)이상, 전면 3.5m이상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93,148	7,762			총금액
인테리어	미지정	37,620	3,135	내부인테리어 공사시작 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임대점포의 노후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전기/철거/외부공 사 별도)
별도공사	미지정	17,160	1,430	-		외부파사드/자동문/ 유리문/유리/기본소 철거 및 폐기물
제작가구	미지정	3,300	275	시공3일전		
이동가구	미지정	4,268	356	시공3일전		
간판싸인물	미지정	9,900	825	시공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LED간판 3.5M기준
기계장비	미지정	15,950	1,329	시공3일전		
포스	협력업체	4,950	413	시공3일전		

- 귀하와 체결된 컨셉별로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전기중설공사/외부간판1면이
상/철거/외부창호/가스공사/소방공사/냉난방기/기타메뉴얼시공외/인덕션+주방소도구, 기판물 4면유리냉
장고, 공사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표의 3.3㎡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
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외 가맹점주 사업자가 추가부담하는 공사비용

구분	내용(평균단가 산출불가)	비고
어닝설치	어닝의 크기, 요구사항등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	
점포기본 구조변경	매장내 벽체거, 화장실설치 및 구조변경, 출입구 및 샷시변경, 철거비용등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음	
외부 방부목시공	점포주변 합법적인 공간에 한해 설치함	
재시공비용	감리의 시행결과 당사가 제공한 표준공사 매뉴얼의 미준수 및 점포의 통일성의 저해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점주의 변심으로 변경을 요하는 경우	

* 상기공사내용의 추가공사는 개설할 점포의 규모나 구조등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다. 그 밖의 필요비용

구분	내용(평균단가 산출불가)	비고
소모품/필요장비	사무용품, 문구류, 컴퓨터, 칼라프린터(월대여도 가능), 청소도구	점주에 따라 다름
영업허가 외	휴게음식점 면허세 및 위생교육비등, 친환경인증비,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외	점포상황에 따라 다름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지선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나, 가맹점 입지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선정의 최종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가 점포 개설요청시 본사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출점가능지역확인 → 현장 상권확인 → 매장개설가능물건으로 현장미팅 → 점포 개설 가능성여부 확인 → 가맹희망자가 매장선택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위생분야 종사가 가능한자	·본사에 출점 승인을 얻은자 ·국가가 지정한 의료검사소에서 검사하여 이상없는자
직원	위생분야 종사가 가능한자	·국가가 지정한 의료검사소에서 검사하여 이상없는자 ·미성년자가 아닌자 / 미성년자는 부모동의후는 가능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본사사전 승인후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가맹본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건물관리비	임대인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건물임차료	임대인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수도광열비	지급대상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경비/CCTV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방제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복합기대여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통신비(전화,인 터넷)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광고, 판촉비	협력업체	행사 15일전 금액 통지	다음 월	해당사항없음	광고, 판촉에 소요	
배상책임 보험	계약대상	비산정	-	-	-	계약상대에 따라 금액 및 지급기한이 상이
교육비	미지정	교육시행 7일전 통지	다음 월	해당 사항 없음	보수교육,신메뉴 교육비로 충당	
간판및실내 설 비 리모델링비 용	미지정	소요비용의 100%를 가맹점사업자가부담	공사 전 선입금	해당사항없음	리모델링공사에 소요	
냉장냉동장비 관리비용 (유지보수)	미지정	일정금액	다음월	해당사항없음	장비 관리에 소요	권장사항
포스장비 유지비용	협력업체	일정금액	당월			
계약중 이 전환 경우	미지정	공사착공전 비용을 정하여 통보	공사전 까지 지불	해당사항없음	공사비용으로 사용	
점포환경 개선비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가맹본부 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수지분석 및 영업활동의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월1회씩 회계 및 재고를 관리 감독합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담당부서
재고관리	실판매량 조사후 사용량과 발주량 조사	월1회	매장운영부
손익관리	가맹점 고정비와 변동비를 계산하여 최적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사	월1회	
판매관리	가맹점 판매량을 조사하여 매장의 특성화를 이해	월1회	
레시피관리	매장담당 운영으로 매장의 균일한 레시비 관리	월1회	
행사관리	월별 진행하는 행사에 관해 적극적동참유도(포스터, POP, Y배너등)	월1회	
위생관리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월1회	

* 상기시기는 영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기 및 경영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재고조사 이외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통보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의 손실 및 부족등으로 즉각적인 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당사는 사전통보없이 재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합의하여 결정				
추가 교육비	합의하여 결정	교육시작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 동일하게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위 서면 통지를 수령한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자연드림 힐링밥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가맹본사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컨셉에 맞는 가맹비를 납부하여 가맹본사와 신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가맹 계약이 종료, 해제, 중도 해지된 경우, 당사의 상호, 상표, 로고,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귀하의 사용권과 이에 의한 귀하의 점포 운영권은 종료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1) 귀하는 본 가맹 계약 종결 즉시 당사에 대한 미불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 (2) 귀하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손해 배상금을 함께 당사에 지급합니다.
- (3) 귀하는 본 가맹 계약이 종료, 해제, 중도 해지된 즉시 점포운영을 중지하고 가맹계약 종료부터 직, 간접으로 귀하가 당사의 가맹계약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 (4)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연관된 사업 방법, 사업절차, 기술 등과 상호, 상표, 로고, 특수양식, 슬로건, 심벌, 마크, 도안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당사가 제작, 제공한 점포 운영 기준 등의 모든 지침과 당사의 소유물이거나 당사가 무상으로 공급, 지원한 물품 및 모든 사본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 시 건물 등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6) 귀하는 당사의 ‘상호 등’이 부착된 장비와 물품으로써 귀하의 소유인 것은 귀하의 부담으로 폐기하거나, 당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 (7) 본 가맹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가맹 계약 종료시에 귀하는 당사의 가맹 점포로 오인되지 않도록 점포의 내·외부를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개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자연드림 힐링밥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자연드림 힐링밥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며, 거래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음.]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며, 거래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주 장보기’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한식 일체	당사가 승인한 상품·용역이외의 상품용역은 당사의 승인없이 취급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통보 2회 위반: 서면통보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등 소비자 외 제3자	전제품	전물품 판매금지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항암현미죽	8,500~9,500(800g)	변경시 안내	23.11.17 기준

항암현미 전복죽	15,000~17,000(800g)	”	”
항암현미 버섯죽	12,400~14,000(800g)	”	”
항암현미 소고기죽	13,500~15,500(800g)	”	”
항암현미 채소죽	11,500~13,500(800g)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사
죽, 비빔밥, 분식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자연드림 힐링밥상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외로 지도내에서 상권을 표기해 줌	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자연드림 힐링밥상’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신규사업확장으로 인하여 hmr 제품 또는 밀키트 제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타 채널(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배달등)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모두 포함, 1년환산 아님)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5%	0.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2024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비중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3 년입니다. 또한 갱신기간은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

“가맹점 운영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가맹본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 운영자”가 위 기간내에 “가맹본사”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가맹점 운영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운영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가맹점 운영자”가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 운영자”에게 천재지변이 생긴 경우.

3. “가맹본사”나 “가맹점 운영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사”나 “가맹점 운영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5. “가맹점 운영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된 경우.

“가맹본사”는 계약갱신 통지시 당시 시행하고 있는 신규 가맹계약조건과 동등한 조건을 준수 할 것을 가맹 사업자에게 갱신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갱신조건에 대해 “가맹점 운영자”가 계약 만료 일 60일 전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조6항-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6항-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조6항-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복장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조6항-4
○ “자연드림 힐링밥상”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조6항-5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조6항-6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본 계약 당사자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27조1항-1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을 하지 않는 경우	27조1항-2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3
○ 본사가 정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4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5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을 경우	27조1항-6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7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및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8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맹점운영권의 양도를 하였을 경우	27조1항-9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7조1항-10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하였을 경우	27조1항-11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27조1항-12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7조2-1)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	27조2-2)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7조2-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7조2-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7조2-5)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7조2-6)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27조2-7)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7조2-8)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7조2-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는 인구동선· 도로· 잠재 구매력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표1,영업거점지역 지도’와 귀하의 영업거점지역을 지정(경계선미포함)하고, 본 계약상 지정된 영업거점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당사의 판단에 의해 신규 출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5조 1항
○ 당사는 귀하의 영업거점지역 내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귀하의 점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동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조 2항
○ “갑”은 “을”의 영업거점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금매장· 백화점· 할인점 등에 Shop In Shop 형태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5조 3항
○ 제1항의 귀하의 영업거점지역에 대해 천재지변, 도시계획변경, 대형건물, 아파트 단지의 건설 기타 영업거점지역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사는 귀하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1항의 귀하의 영업거점지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조 4항

동의를 권리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본 가맹 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사는 귀하의 본 가맹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본 가맹 계약서상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귀하의 그 권리의 불행사에 대한 신뢰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 3자와 새로운 권리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귀하와 특정한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당해 사실에 국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전에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승인 없이 귀하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도(실질적인 점포 운영권의 이전도 포함), 이전, 담보설정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귀하가 해외이주, 질병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포 운영이 곤란하고,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별도로 고지하는 기준에 의하여 점포의 매출액 및 손익, 양수희망인의 자격평가 등을 통하여 양도 또는 이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승인을 얻으려면 귀하가 2개월 전에 당사로 사유를 적시해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당사는 서면을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합니다.

당사는 양도와 관련하여 귀하와 양수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의 전후를 불문하고 귀하의 점포에 대한 투자비내역,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당사와 귀하의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가맹금을 지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3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당사 소정양식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당사 소정양식	단, 대리인 명의의 사업자 변경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로 간주 합니다.
업무위탁	불가능	-	-	-

※상속인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는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에 관한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영업지역 내에서 ‘자연드림 힐링밥상’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죽, 비빔밥, 김밥등 분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소요) → 허가여부통지 → 완료	문의: 매장운영부 (031-428-3123)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자연드림 힐링밥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최소 09:00~22:00시까지	본사가 지정한 휴일 제외	문의: 매장운영팀 (031-428-3097,3121,3091)

*영업시간의 변경은 변경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 한하여 본사의 승인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가맹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및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계도→완료	1회/2주	매장운영팀	(별첨자료3)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및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계도 →완료	1회/2주	매장운영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계도 → 완료	1회/2주	매장운영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자연드림 힐링밥상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전체 행사	월별 주요광고 및 행사이벤트	50%	50%	이벤트 유형에 따라 별도공지	대중매체 광고 명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전단지 및 홍보지	50%	50%		

위 내용은 본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질 경우 가맹점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단, 판촉 및 광고 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릿,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의 내용은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 등은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제27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사는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1) 계약 해지일(귀하의 해지 통보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귀하가 당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매입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 1호에 있어 귀하의 점포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로 환산, 계산한다.

2.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 귀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사에 배상해야 한다.
 - 1) 가맹 계약 해지일(당사의 해지 통보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귀하가 당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 1호에 있어 귀하의 점포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로 환산, 계산한다.

3.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이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3~21 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이전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D-45 이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5 이전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45 이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이후 14일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5 이전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5~10(3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6(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자연드림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본부와 사업자간에 본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와(“가맹본부”의 임직원 포함)과 사업자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가맹본부”와 “사업자”간에 본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서면으로 상대방에서 통지하거나, 국내법상 소송에 의한 방법에 국한하여 해결한다. 위 규정을 위반한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집기·장비교체비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점포내 인력을 지원함	가맹점의 매장면적, 운영컨셉등에 따라 판촉인원 수 차등 지원	오픈 당일까지	실비정산	
판촉행사	판매 및 이벤트 활성화 방안	점주와 협의 후, 본사 논의 후 지원	판촉행사기간동안	실비정산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신규제품 및 신규상품 교육시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매장운영부 (031-428-3063)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신규제품 및 신규상품 교육시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매장운영부 (031-428-3063)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자연드림 힐링밥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오픈전	* 자연드림 힐링밥상 메뉴얼 및 제조교육	실습교육	오픈 전 1개월	필수교육
보수교육	* 신메뉴개발교육, 점주요청교육(유상)	집합교육 (권역별 진행)	상시	필수/ 선택교육
기타교육	1) 온라인 직무교육 - 대상 : 점장 및 매장 소속 직원 2) 실무특강 - 대상 : 점장 및 매장 소속 직원	1) 온라인 2) 집합교육, 실습교육	상시	선택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자연드림 힐링밥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	3일	5,500,000원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개별협의	점주와 별도협의하여 진행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매장교육연수, 기타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 오픈일정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 메뉴 교육, 보수교육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에 정당한 사유로 불참 시 차 후 실시하는 보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순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자연드림 힐링밥상 분당이매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4 1층
2	경기	자연드림 힐링밥상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7번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132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 수령자

구분		내용 / (자필로 작성)		
제공일자 / 제공장소		2025년 00월 00일 / _____에서 제공받음)		
수령자	이름	(서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령내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가맹본부 : (서명)

수령인 : (서명)

(절취선)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 수령자

구분		내용 / (자필로 작성)		
제공일자 / 제공장소		2025년 00월 00일 / _____에서 제공받음)		
수령자	이름	(서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령내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가맹본부 : (서명)

수령인 : (서명)

■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가맹점 현황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②항에 의거

- 정보공개서 제공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있는 경우

순번	가맹점명	전화번호	소재지
1	없음	없음	없음
2			
3			
4			
5			
6			
7			
8			
9			
10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을 경우
 - 해당 지역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공일 : 2024년 04월 01일

가맹희망자 : (인/서명)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개설지원팀(031-428-312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icoop.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쿵스토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